

방사선작업종사자에대한보상규정

제정 : 2011.06.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대원대학교의 교직원이 원자력 이용 중에 방사선에 의하여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규정을 정하여 교직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함으로써 교직원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교직원"이라 함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 대학교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는 교직원이 재직기간 중 방사선에 의하여 입은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규정) 교직원이 방사선에 의하여 입은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규정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규정) ① 교직원이 방사선에 의하여 입은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규정은 금전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보상금액은 피해를 입은 당시 목적물의 가격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목적물의 가격은 자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금액을 말한다.

제6조(보상의무) 본교는 이 규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제7조(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교직원이 방사선피폭을 원인으로 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기타의 보상을 받은 경우 본교는 그 보상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한다.

제8조(건강진단) ①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② 본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최대 허용 피폭선량을 초과하여 피폭된 교직원에 대하여는 퇴직 후에도 동인의 요구가 있을시 연 1회에 한하여 방사선장해 여부 대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9조(분쟁조정) ① 보상에 관하여 본교와 피해 당사자 사이에 분쟁발생시 양당사자는 즉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이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분쟁중재를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한 관련문서의 제출, 증인 및 진술을 요구할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양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보고) 본교 교직원에 대한 보상사유의 발생 및 보상결과에 대하여 즉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